

현안분석 2009-15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김 정 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연구자 : 김정순(연구위원)

Kim, Jeong-Soon

2009. 12. 30.

국문 요약

21세기 들어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문화경쟁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경쟁력은 자국의 정체성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전통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예술은 한 국가의 생활, 풍습, 사상, 철학, 종교 등이 응축된 역사적 결정체이기 때문에 전통예술을 온전히 전승하고 미래의 문화에 걸맞게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양식 문화와 교육체계의 도입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체계적으로 전승·육성되지 못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전통공연예술은 가장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현대공연예술에 비해 떨어지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장려가 필요하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반적인 진흥 및 지원 대책으로는 자생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공연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통공연예술의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공연예술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전통공

연예술 관련 법제 현황의 개관을 통하여 우리 나라 법제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보며, 제5장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법(안)은 전통공연예술 보전·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의 설치, 전통공연예술보전 및 조사·연구 지원, 전통공연예술인 지원 및 전문공연장 등 지정, 전통공연예술 교육의 확대,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공연예술활동 활성화,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연계 등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키워드 : 전통예술, 전통공연예술, 문화예술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공연법, 중요무형문화재

Abstract

Recently, cultural competitivenes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raditional performing art is one of the best examples to examine each country's cultural competitiveness.

Since traditional performing art is a historical crystal of each country's life, thought, philosophy and religi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will guarantee most competitive national brand.

However, traditional performing art is not popular in Korea due to the western culture and education system and the failure of systematic promotion. Although it is understood that traditional performing art should be protected and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current law and policy are not enough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Under the circumstances, enactment of related laws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is needed for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infrastructure.

In Chapter 2, we will look at the current policy on traditional performing art and in Chapter 3, the related current laws will be reviewed.

In Chapter 4, laws related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 in Japan will be reviewed and in Chapter 5, the draft of the Promotion Law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 will be presented and explained.

※ Key Words : Traditional **Art**, Traditional Performing **Art**, the Basic Law of Cultural **Art**, the Protection Law of Cultural Property, the Performing Law, the Maj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목 차

| | |
|---------------------------------|----|
| 국문요약 | 5 |
| Abstract | 7 |
| 제 1 장 서 론 | 1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
| 제 2 장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책의 현황 | 13 |
| 제 1 절 전통예술 정책의 기본방향 | 13 |
| 1. ‘비전 2010’의 수립 배경 및 대상 | 13 |
| 2. 내 용 | 14 |
| 제 2 절 전통예술 주요정책 현황 | 16 |
| 1. 전통예술의 원형 탐구·복원 및 재현 | 16 |
| 2.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창작활동 지원 | 16 |
| 3. 전통예술 대중화 및 과학화 지원 | 18 |
| 4. 국악 인프라 구축 | 21 |
| 제 3 장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의 현황 | 23 |
| 제 1 절 문화예술진흥법 | 23 |
| 1. 개 관 | 23 |
| 2. 주요 내용 | 24 |
| 제 2 절 공연법 | 26 |

| | |
|----------------------------------|----|
| 1. 개 관 | 26 |
| 2. 주요 내용 | 27 |
| 제 3 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28 |
| 1. 개 관 | 28 |
| 2. 주요 내용 | 29 |
| 제 4 절 문화재보호법 | 32 |
| 1. 개 관 | 32 |
| 2. 주요 내용 | 33 |
| 제 5 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37 |
| 1. 개 관 | 37 |
| 2. 주요 내용 | 38 |
| 제 6 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39 |
| 1. 개 관 | 39 |
| 2. 주요 내용 | 40 |
| 제 7 절 지방문화원진흥법 | 40 |
| 1. 개 관 | 40 |
| 2. 주요 내용 | 41 |
| 제 8 절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 42 |
| 1. 개 관 | 42 |
| 2. 주요 내용 | 42 |
| 제 4 장 일본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 | 45 |
| 제 1 절 문화예술진흥정책 | 45 |

| | |
|--|----|
|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 | 45 |
| 2.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지원 | 46 |
| 3.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 47 |
| 제 2 절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 | 49 |
| 1. 문화예술진흥기본법 | 49 |
| 2.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 3. 문화재보호법 | 56 |
| 4. 문화공로자연금법 | 59 |
| 5. 소 결 | 60 |
| 제 5 장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 61 |
| 제 1 절 전통공연예술진흥법 제정 관련 쟁점 | 61 |
| 1.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전통) 진흥과 중복문제 | 61 |
| 2. 전통공연예술과 현대공연예술과의 형평성 문제 | 62 |
| 3. 지원사항별 문제 | 64 |
| 제 2 절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 74 |
| 1. 전통공연예술의 범위 | 74 |
| 2. 전통공연예술의 보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 75 |
| 3.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계승 | 77 |
| 4. 전통공연예술의 육성 및 진흥 | 80 |
| 5. 전통공연예술진흥원 및 국악방송국의 설립 | 83 |
| 참 고 문 헌 | 87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1세기 들어 국가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문화경쟁력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경쟁력은 자국의 정체성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전통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예술은 한 국가의 생활, 풍습, 사상, 철학, 종교 등이 응축된 역사적 결정체이기 때문에 전통예술을 온전히 전승하고 미래의 문화에 걸맞게 활성화하는 것은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서양식 문화와 교육체계의 도입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체계적으로 전승·육성되지 못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2009년 공연분야 예산 중 전통예술 관련 예산 14%이며,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통예술분야 지원은 전체지원 예산의 5.7%이다.

서양공연예술과 대중예술이 주류문화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전통공연예술은 가장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현대공연예술에 비해 떨어지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장려가 필요하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반적인 진흥 및 지원 대책으로는 자생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현대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전통공연예술은 ‘국악’으로만 통합되어 있어 현대공연예술에 비하여 진흥 및 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다.

전통공연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통공연예술의 안정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보고서는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는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 보며, 제3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공연예술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 현황의 개관을 통하여 우리 나라 법제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제5장에서는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법(안)은 전통공연예술의 범위, 전통공연예술 보전·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전통공연예술전문위원회의 설치, 전통공연예술보전 및 조사·연구 지원, 전통공연예술인 지원 및 전문공연장 등 지정, 전통공연예술 교육의 확대,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전통공연예술활동 활성화,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연계 등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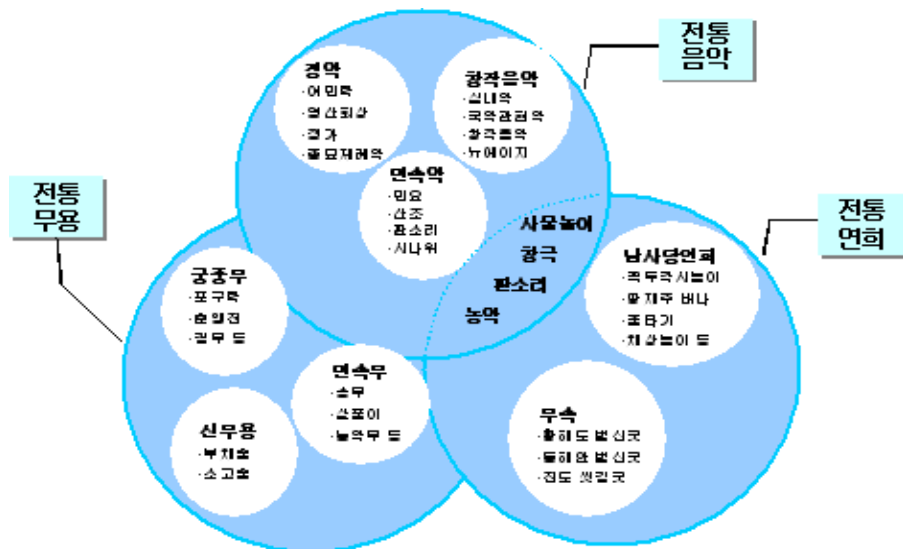
제 2 장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책의 현황

제 1 절 전통예술 정책의 기본방향¹⁾

1. ‘비전 2010’의 수립 배경 및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시키고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전통예술 활성화를 역점추진시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예술팀을 2006년 7월에 신설하고, 9월 27일 <전통예술활성화 방안-비전2010>이라고 명명된 전통예술진흥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를 의미하는 하는 좁은 의미의 전통예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전통예술의 범주>



1)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예술팀, 전통예술활성화 방안-비전 2010, 2006.9. 27 내용 정리.

2. 내 용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 비전2010> 대책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전통예술’을 그 비전으로 하여, 우리문화의 원형질로서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잊혀지고 소외받아왔던 전통예술의 원형을 회복하여, 국민의 일상으로 돌려주고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통예술을 한류의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시키고자 전통예술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비전 2010>의 실현방안으로 i) 전통예술 원형보전 및 창작활동 지원, ii) 대중화·산업화, iii)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진흥, iv) 세계화 및 한류확산, v)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와 총 27개의 세부 추진시책들을 제시했다.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사업>

| 5대 정책과제 | 27개 세부 추진사업 |
|----------------|---|
| 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 전통예술 원형탐구 및 재현 전국 전통연희 축제 개최 전통연희 특화공연장 지정 및 공연활동 지원 신진 국악인 창작활동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운영 지원 대한민국 전통예술 대상 신설 |
| 대중화 · 산업화 | ⇒ 전통예술 종합정보센터(아카이브) 운영 전통예술 체험활동 지원 전통예술 평가·명소 지정 |

| | |
|------------------|--|
| | 생활음악 개발·보급 확대 전통예술 소재 문화상품 개발 국악기 과학화 및 악기개발 |
| 인재양성 및 학술진흥 | ⇒ 학교 전통문화교육 확대 예술 중고등학교 국악교육 진흥 대학 국악교육 개편 유도 및 E-국악아카데미 운영 전통예술 전공 졸업자 인턴제 실시 전통예술분야 우수논문 및 출판 지원 |
| 세계화 및 한류확산 | ⇒ 국가 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및 해외진출 드림팀 구성 지역별·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지원 주한 외국인 초청 한국문화 큰마당 잔치 개최 |
|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 ⇒ 전통예술진흥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지방국악원 특성화 및 운영개선 남원 국악의 성지 개관 국악방송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 전통예술경연대회 공정성 제고 방송의 국악 프로그램 확대 |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전통예술의 진흥을 통한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국민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전통예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월드뮤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i) 전통예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보존뿐만 아니라 현대적 활용을 위한 재해석과 창작의 활성화 등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ii)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문화산업 자원화를 이루는 것이며, iii) 중앙과 지방의 상호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 전통예술이 활성화되게 하는 것이다.

제 2 절 전통예술 주요정책 현황²⁾

1. 전통예술의 원형 탐구·복원 및 재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제강점기의 왜곡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한국의 굿, 궁중 연례악·제례악, 지방관아음악, 판소리 등 전통예술의 원형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원형대로 복원 및 재현하는 사업을 2007년부터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연 형태로 재현하는 사업과 DVD 제작 등 디지털화를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2009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중에는 「인천부평삼산농악」(복원 및 재현 사업명)이 있으며 주관단체는 부평문화원으로 부평삼산역사박물관(2009.2.7)에서 복원 및 재현되었다. 또한 「성남오리뜰두레농악 농사풀이 및 농요」(복원 및 재현 사업명)가 한국농악보전협회 성남지회를 주관단체로 하여 대한주택공사(2009.1.7)에서 복원 및 재현되었다.

2. 전통예술 경연대회 및 공연·창작활동 지원

(1)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우수한 국악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전통예술 경연대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고 있으며, 2005년에 93개 행사, 2006년에 102개 행사, 2007년에 102개 행사, 그리고 2008년에 109개 행사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2009.10, 404--428쪽 발췌 정리.

국악교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개최

전통예술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악창작곡 개발 -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총 123곡이 응모하였으며 응모작품 중 10곡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작품발표회”(2008. 9. 11, 국립국악원 예약당)를 가졌고, 선발 작품에 대하여는 음반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도 한다.

(3) 전통연희축제 개최

1) 전통연희는 악·가·무의 원형을 담고 있고, 전통예술은 세계화·산업화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그간 사회적·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므로, 정부는 전통연희의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서 전국 전통연희단이 함께하는 전통연희축제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연희 보존회 지정 현황>

| 구 분 | 종 목 | 보유자(단체) |
|---------|-----|---------|
| 중요무형문화재 | 24 | 43 |
| 시·도 지정 | 86 | 103 |
| 계 | 110 | 156 |

2) 악·가·무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인 전통연희를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국가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고, 전통에 기반을 둔 창작연희 발굴을 지원하며, 전통연희의 대중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다.

전통연희축제는 “전통연희축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 전통연희축제의 공연 프로그램은 크게 공식행사, 국내초정, 해외초청, 창작연희, 국민참여연희로 이루어진다.

3. 전통예술 대중화 및 과학화 지원

(1) 국악 FM방송 운영 활성화

2001년 3월 개국한 국악 FM방송은, 민족문화예술 중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와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다목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일원에만 송신되던 국악방송의 전국화 추진을 위하여 중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남도 중계소의 완공으로 현재 남원, 진도, 해남 일원으로 청취권역이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그동안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되어 오던 관리운영비(1,504백만원)를 국고로 전환하였으며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문학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또한 포항·경주 중계소 설치를 위해 2009년 국고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영남지역에 최초로 국악방송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

| 명칭 | 방송구역 | 주파수 | 송신소 | 개국 |
|------------|-------------------|---------|--------|------------|
| 국악FM방송국 | 서울, 경기 일원 | 99.1MHZ | 남산서울타워 | 2001. 3. 2 |
| 국악FM남원 중계소 | 전북 남원시 일원 | 95.9MHZ | 남원 교통산 | 2001. 6. 1 |
| 국악FM남도 중계소 | 전남 진도, 해남, 강진, 신안 | 94.7MHZ | 해남 대둔산 | 2006. 7. 6 |

(2)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운영

국악의 대중화 및 신진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상설공연은 2008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놀이마당, 부산 용두산공원,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 광주 쌍암공원, 대전 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야외음악당, 경기 수원만석공원, 전북 도청 야외공연장, 춘천 어린이회관 야외공연장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운영하였다. 전국적으로 225회를 운영하고 382개 팀(신진예술가 117팀 포함)이 출연하였다.

(3) 생활음악 개발 및 보급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전통예술팀 조직 신설과 함께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 국립국악원과 국립중앙극장은 공동으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민의례 등 국악의식 음악곡을 개발 보급하여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ii) 국립국악원에서는 전문 작곡가를 위촉하여 휴대폰 벨소리·통화연결음·학교시중음악·안내방송용 신호음악, 명상·요가·태교음악, 세시풍속 절기음악, 다용도 국악배경음악 등과 같은 생활음악을 개발하였다. iii) 나아가, 이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음악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안내방송용 신호음악을 보급하는 등 국악을 개발하고 대중화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국악기의 과학화 및 악기개량 사업 확대

다양한 악기연구 사업은 우리 국악의 대중화·세계화 그리고 한국적 디지털 콘텐츠 음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된다. 이를 위하여 국립국악원은 2006년에 악기연구소를 설립하여 음향 및 물성 연

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악기 표준화·악기인증제 등을 실시·보급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대표적인 국악기 8종의 음색 및 음량 조사, 관악기 4종 74개의 물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5)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이는 조선조 선비들이 풍류음악을 즐겼던 고택의 사랑방, 정자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명소를 활용하여 줄풍류, 가곡 등 풍류음악과 판소리, 산조 등 고품격의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문화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초년도인 2008년은 전국의 유명 고택, 정자 가운데 공연환경, 관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릉 선교장, 영주 소수서원 등 4개소를 선정하여, 고택 및 정자 등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고 음향 또한 자연적인 공간울림을 최대한 이용하여 지역별로 5회 이상 공연을 개최하였다.

(6)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상품화

이는 궁중에서 연희되었던 품격있는 궁중예술의 원형 재현을 통해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의 우수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고궁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사업으로, 창덕궁, 덕수궁 등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문화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7) 전국예술계 국악전공 중고등학교 장학지원

이는 전국 예술계 중고등학교 국악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중·고등 단계에서의 국악교육의 쇠퇴는 대학교육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장래의 국악 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는 인식하에 추진된 사업이다. 예술계 중·고등학교는 물론 국악계 전체적으

로 높은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i) 전국 20개 예술계 중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국악전공 우수학생 장학금을 전달하고, ii) 국악교육에 필요한 악기 등의 교구재 구입비를 20개 학교에 지원하고, iii) 또한 고등학교 국악분야 전공 학과의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지역 내 중학교를 순회공연하며 국악분야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국악 인프라 구축

(1) 국립국악원 설립과 지방 국립국악원 특성화 및 운영개선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공연, 관람, 교육, 연수, 자료전시, 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통국악의 원형 재현과 보급 활성화 및 국악연구 등 민족음악의 전승·보존·발전을 위해 국립국악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1951년 개원). 또한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예술진흥을 위해 지방에도 국립국악원을 설립하였는데, 1992년 3월에 전북 남원에 민속국악원, 2004년 7월에 전남 진도에 남도국악원을 개원하였으며, 동남권 전통예술 콘텐츠의 활성화와 한태평양 문화관광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8년 10월에 부산국악원을 개원하였다.

지방 국악원을 지방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특성화하여 지방무형문화유산의 원형발굴·보존·전승을 담당하는 전문기관화를 유도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 국악원의 인사·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38호에 의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이 공포되어 문교부 직속학교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2004년도에는 국악학교 9학급, 국악고등학교 15학급으로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악고등학교와 국악학교의 2개 학교가 겸임 교장 하에 운영되고 있다.

(3)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 하기 위하여 국립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인 서울국악예술중 · 고등학교를 국립화한 것으로 동교의 국립화는 서울국악예술중 · 고등학교가 학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립화를 건의함에 따라 공청회, 대국민 토론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8년 2월 14일 자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 공포하고, 2008년 3월 1일자로 학교 명칭을 국립 전통예술학교 · 전통예술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는 전통예술학교가 학년마다 각 2학급씩 전체 6학급, 전통예술고등학교가 학년마다 각 6학급씩 전체 18학급으로 편제되었으며, 입학 정원은 전통예술학교가 60명, 전통예술고등학교 180명 등 전체2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학교 과정인 전통예술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전통예술고등학교는 각각 별도의 교육기관으로 1명의 교장이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 3 장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의 현황

우리 나라 현행법체계는 전통공연예술에 관하여 독립적인 법률을 갖고 있지 않고 관련 법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는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통공연예술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걸맞는 입법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법률 마련의 선행작업으로서 아래에서는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 1 절 문화예술진흥법

1. 개 관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법률 제2337호)되었다. 동 법은 총 제6장 제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 공간 설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예술 법인의 지정·육성, 문화지구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의 날 지정 등 문화예술복지의 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나 문화예술 재화·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목적 및 적용대상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다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의 목적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에는 문학, 미술(응용 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을 의미한다고 하여(법 제2조 제1호), 국악 정도만 전통문화예술로 구분할 수 있을 뿐으로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근거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 수립

동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할 의무가 있다(법 제3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5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고,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법 제7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3) 시·도지사의 문화지구 지정·관리

시·도지사는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8조).

(4) 문화예술 복지의 증진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의 날과 문화의 달을 설정할 수 있고(법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법 제11조).

(5)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법 제16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운용·관리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및 발전 등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예술의 보급 및 보존, 계승을 위한 재원이 된다(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19조).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동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20조) 전통공연예술 진흥 사업과 활동에 있어서 동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 제23조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위원추천위원회에도 전통예술 분야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에 전통예술 분야의 인사의 참여가 기대될 수 있다.

제 2 절 공연법

1. 개 관

『공연법』은 공연에 있어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61년에 제정(법률 제902호, 1961. 12. 30. 제정)되었으며 총 8장, 4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해 공연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공연장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연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연장 설치 시 무대

시설에 대한 설계검토·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연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외국 공연물의 공연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의 일환으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률은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및 그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공연의 개념

공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동법은 ‘공연’에 대해서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서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국악, 마당놀이, 전통춤 등 전통공연예술이 동법의 ‘공연’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단, 이러한 행위가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적인 것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2)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 계획에는 공연예술인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 또는 공연장 등 공연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등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계획과 실행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법 제3조).

(3) 공연장의 설치·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법 제8조), 공연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법 제9조).

(4) 공연에 대한 지도·감독

1963년 3월 12일 개정된 『공연법』(법률 제1306호)에는 각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규정³⁾되어 있었다. 이것은 공연물의 질적 향상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에서 인정된 것이지만, 공연 전에 각본을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연 자체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검열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폐지되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상황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행하고 있다(법 제31조).

제 3 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개 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분야의 기본법으로

3) 공연자가 영화이외의 공연물을 공연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그 각본 또는 대본에 대하여 등록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제14조의2 제1항), 심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각본 또는 대본에 의한 공연은 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제정(법률 제 5927호, 1999. 2. 8. 제정)되었다. 동법은 총 7장 5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 계획의 수립 등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및 문화사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 조성, 문화산업정책 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문화산업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문화산업의 범위 확대

법 제정 당시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문화산업의 범위를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출판·인쇄물, 정기간행물, 방송프로그램,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통공예품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였으나,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통해서 문화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영화·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만

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저장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전통의상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등이 동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전통공연예술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전통문화자원을 이용한 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조사·연구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법 제3조). 문화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고(법 제15조), 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와 우수문화사업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 제15조의 2).

(3)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

1)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16조).

2) 문화산업시설 지정 제도

법 제21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할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3) 문화산업단지 조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관련 기술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 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법 제24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한다.

4)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속하는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28조의 2). 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

구법에 의하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법 제39조). 이러한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등으로 조성되고(법 제39

조),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의 책임을 부담하였다(법 제40조). 기금은 주로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제작 지원,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또는 문화상품의 제작 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나,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규정⁴⁾에 의하여 기금에 관한 제규정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국가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문화산업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신설되었다. 법 제43조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것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여야 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전문회사는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 운용,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법 제49조) 문화산업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4 절 문화재보호법

1. 개 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4)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부칙 제2조는,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제1항),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출자하고,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제2항)고 문화산업진흥기금 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8·9, 제령 제6호)을 폐지하는 대신 제정(법률 제961호, 1962. 1. 10)되었다. 동법은 총 8장, 1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문화재를 ① 국가지정문화재, ② 매장문화재, ③ 국유문화재, ④ 시·도 지정 문화재의 4가지로 나누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자격 및 역할,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및 취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법은 각각의 문화재에 관한 내용,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건설공사 시행자 등에 대한 의무사항 및 동법 규정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i)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의미하고, ii)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iii)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성터 등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큰 곳을 의미하며, iv)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전통공연예술은 실연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서 무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동법에서 언급되는 지정문화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i) 문화재청장이 동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 ii) 시·도지사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도지정문화재’, iii) 전술한 2가지에 의해 지정되지 않고, 시·도지사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자료’가 그것이다(법 제2조 제2항).

(2) 문화재위원회 설치

동법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등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법 제4조). 이러한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412호, 2009. 4. 6, 일부개정)이 존재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되며, 위원은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고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가 존재한다.

(3)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문화재를 보유한 사람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법 제6조).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정 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이 이루어지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0조). 문화재청장은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법 제11조). 이러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은 인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12조).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의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중요한 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법 제36조 제2항). 이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만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법 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는 일정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법 제36조 제3항). 이뿐만 아니라 동법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2항). 또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보유자 중 개인이 전부 사망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전술한 전수교육 의무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법 제36조의 2). 이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개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감독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법 제45조). 단 이때에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기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과 그 해제 등에 관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5 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 개 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9일 제정(법률 제7774호)되었다.

동 법률은 총 제5장,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예술교육의 목적과 관련 용어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률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등의 설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망 구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동 법률은 국공립문화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주요 내용

(1) 전통공연예술교육의 근거 규정

동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므로(법 제2조 제1호), 앞에서 언급한 법률에 전통공연예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동법을 전통공연예술교육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동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차원과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사회차원에서 실시된다.

(2)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법 제8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8조).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운영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둔다(법 제9조).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지원은 학교와 사회의 이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정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고(법 제14조),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다양하고 양질의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법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15조 및 제21조)

(4)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힘써야 한다(법 제27조). 따라서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에 대해 연수 등 교육기회의 제공,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 6 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 개 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

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9월 27일 제정(법률 제7992호)되었다. 동법은 총 9장,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의 문화적 역할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의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동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의 책임은 광주광역시장에게 부과되어 있다. 그리하여 광주광역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시민문화 진흥, 문화산업 기반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전통공연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전통 및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7 절 지방문화원진흥법

1. 개 관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법률 제4718

호, 1994. 1. 7. 제정)되었다. 동 법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설립, 설립인가기준, 기준시설, 임원,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정치나 종교활동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지방문화원의 설립

동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설립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두어 인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시, 군,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며,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4조). 지방문화원은 1 사업구역 내에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서, 회비 등 재원 수입으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5조).

(2)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계발), 보급, 보존, 전승(전승)

및 선양(선양), ② 향토사(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사료)의 수집·보존, ③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④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⑤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⑥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⑦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⑧ 지역문화의 창달(창달)을 위한 사업, ⑨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8조).

제 8 절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1. 개 관

동 시행령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고 그 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대통령령 제14982호, 1996. 4.19. 제정)되었다. 총 22개조로 구성된 동 령은 『고등교육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동 령에 의해서 설립되는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관할 아래 두되, 장관은 전통문화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위탁한다(령 제3조).

전통문화학교의 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령 제9조).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

표하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학칙을 정하고(령 제4조), 교육과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령 제9조).

전통문화학교의 전통문화사과정에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령 제14조), 학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에 준하되, 구체적인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령 제15조). 전통문화사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나, 재능이 뛰어나 해당 연한 이내에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업연한의 단축이 인정될 수 있다(령 제16조). 전통문화사과정의 학생에게는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령 제20조).

이러한 전통문화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령 제22조).

제 4 장 일본의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제

제 1 절 문화예술진흥정책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⁵⁾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등을 배경으로 의원입법으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2001년 11월 30일에 성립, 동년 12월 7일에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문화의 핵심을 구성하는 예술, 미디어예술, 전통예술, 생활문화, 국민오락, 출판물, 레코드, 문화재 등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함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은 이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9일에 각의 결정된 『제2차 기본방침』은 문화예술진흥의 오늘에 있어서의 의의나 여러 가지 사회전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략 5년간(2007년~2011년)을 예측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 기본 관점, 중점사항, 기본적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청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과 『제2차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국가만들기를 추진하는 ‘문화예술입국’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의 종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5) 일본 文部科學省, 『2008 文部科學白書』, 2009, 242쪽 발췌

2.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 지원⁶⁾

(1) 문화예술창조 플랜에 있어서의 예술창조활동의 활성화지원시책

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무대예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영화·영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진예술가, 감성이 풍부한 문화 담당자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청에서는 종래의 지원시책을 재구축하여 2002년도에 『문화예술창조플랜』을 수립하여 ① 최고수준의 무대예술공연·전통예술 등에의 중점지원 등, ② 『일본영화·영상』 진흥플랜, ③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진예술가등의 인재육성창조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2) 예술문화진흥기금

예술문화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으로부터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양한 예술문화활동에 대해 안정적·계속적으로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 1990년 3월에 만들어졌다. 현재 약 653억엔(국가로부터의 출자금 약 541억엔, 민간으로부터의 출자금 약 112억엔)의 운용이익으로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행하는 예술의 창조나 보급활동, 지역의 문화시설에 있어서의 공연·전시활동 등에 대해 조성⁷⁾을 하고 있다.

6) 일본 文部科學省, 244-5쪽.

7) 예술문화진흥기금으로부터의 2008년도 조성액을 보면 ①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예술 창조 또는 보급을 위한 활동에 약 2,590만엔, ② 지역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약 3억 510만엔, 그리고 ③ 문화 단체가 행하는 문화의 진흥 또는 보급을 위한 활동에 약 1억 3,730만엔이다.

3.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

(1) 무형문화재의 보존⁸⁾

무형문화재단 연극, 음악, 공예 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무형문화재’라 한다. 무형문화재는 인간의 행위 그 자체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행위를 체현·체득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표현된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국가는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동시에 이러한 행위를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자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보유자의 인정에는 ① ‘개인설정’(중요무형문화재인 예능 또는 공예 기술을 고도로 체현·체득하고 있는 자를 인정하는 것(이 보유자가 이른바 「인간문화재」)), ② ‘종합인정」(두 명 이상의 사람이 일체가 되어 무대를 구성하는 예능의 경우 그 행위를 고도로 체현하고 있는 자가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것), ③ ‘보유단체인정’(중요무형문화재의 성격상 개인적 특색이 적고 해당 행위를 보유하는 자가 많은 경우, 이러한 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고 있는 단체를 인정하는 것) 등 3가지 방식이 채택되어 일본의 전통적 행위의 계승을 도모하고 있다.

2) 보존 정책

중요무형문화재의 각개 인정의 보유자에 대해 행위의 연마 향상과 전승자의 양성을 위한 특별 조성금을 교부함과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8) 일본 文部科學省, 앞 책, 256쪽.

의 보유 단체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전승자 양성 사업, 공개 사업 등에 대해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서 무형문화재의 보존을 도모하고 있다.

(2)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⁹⁾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적 법적 틀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어 2006년 4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일본은 조약의 조기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 6월에 3번째 체결국이 되었다.

본 조약은 체결국에 대해 국내 무형문화유산을 특정하기 위한 목록 작성을 요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일람표』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본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심의를 한 결과, ①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로 지정·선정한 문화재의 일람을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서 유네스코에 제출하며, ②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일람표』에는 14건의 무형문화유산을 제안하고, 그리고 ③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무형문화유산 일람표』에는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 및 외무성·문화청 연합회의에서 승인하여 2008년 9월말,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및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일람표』에의 14건 제안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었다.

9) 일본 文部科學省, 앞 책, 263쪽.

제 2 절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

1. 문화예술진흥기본법

(1) 개 관

제153회 임시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2001년 11월 30일에 성립하여 동년 12월 7일에 법률 제148호로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시행되었다.

본법 제정의 목적은 문화 예술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오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 예술에 관한 활동(이하 「문화 예술 활동」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자(문화 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을 취지로 하며,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함으로써 풍요로운 국민 생활 및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법 제1조).

(2) 주요 내용

1)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수립 등

정부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해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기본방침은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한다.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 의 의견을 들어 기본방침안을 작성하며, 문부과학대신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제7조).

2)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8조~제35조 관계)

① 예술의 진흥

국가는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 예술(미디어 예술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위해 이러한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의 지원, 예술제등의 개최,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8조).

② 전통 예능의 계승 및 발전

국가는 아악(雅樂)¹⁰⁾, 노가쿠(能樂)¹¹⁾, 분라쿠(文樂)¹²⁾, 가부키(歌舞伎)¹³⁾, 그 외 일본 고래의 전통적인 예능(이하 「전통 예능」이라고 한

10) 아악(雅樂)은, 일본 고래의 음악이나 무용과 5세기 무렵의 불교 문화의 도래를 전후하여 일본에 전해진 고대 아시아대륙 제국의 음악과 무용이 융합한 예술로, 다이호령(701년)으로 창설된 아악기숙사로부터, 현재의 궁내청의 일부국악부에 이를 때까지, 1,300년 이상이나 계승되어 왔다. 현재도 황실이나 일본 각지의 신사에서의 행사나 제례에 연주되는 것 외에 궁내청 악부에 의한 전국 공연이나 해외 공연에서 그 음악과 무용을 볼 수가 있다. http://www.bunka.go.jp/culture-online/jp/genre/classical_drama.html

11) 室町시대에 観阿弥·世阿弥 부자에 의해 대성된 能은 극도로 간소화된 무대에서의 상징적인 연기·연출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격조 높은 문어체를 가사로 하는 음악극인 能과 평이해 알기 쉬운 회화체로 연기할 수 있는 대사극의 회극이 세트가 되어, 예능 장르 「能樂」을 구성하고 있다. http://www.bunka.go.jp/culture-online/jp/genre/classical_drama.html

12) 人形淨瑠璃文樂은 일본 전통 음악의 일종(샤미센 음악)에 맞추어, 인형을 조종해 연기하는 인형극이다. 17세기 후반 오사카에서 발생했다. 한 명의 이야기꾼과 한 명의 샤미센 연주가 한 조가 되어 스토리를 전개한다. 역동적인 표현으로 드라마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은 나레이션은 물론, 남녀노소 모든 등장 인물의 대사나 성격 등 모든 것을 혼자서 말로 한다. 소리를 내는 샤미센은 모든 샤미센중에서도 가장 박력이 있는 울림소리를 내며,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은 세 명이다. 움직임의 섬세함, 표정의 아름다움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세 개의 업무가 일체가 되고 비로소 무대가 완성된다. 회곡의 완성도도 뛰어나므로, 오늘의 가부키의 상연 목록 중 약 3할이 일본 고유의 인형극 연극에서 유래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http://www.bunka.go.jp/culture-online/jp/genre/classical_drama.html

13) 유네스코의 선언에서는 「전통적인 연기 연출 양식에 의해 상연되는 가부키(歌舞伎)」라고 기록되고 있다. 能樂을 표본으로 하여 철저하게 오락성을 추구한 것이 가부키라고 할 수 있다. 1603년, 교토에서 아쿠니가 연기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라고 하고 있다.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것은 남성만으로 그들은 특수한 분장을 하여, 양식화된 행위나 연기를 펼친다. 연출면에서는, 샤미센다른 다채로운 효과음, 독특한 의상, 만, 대도구·소도구, 무대 기구 등을 구사해, 모든 감각에 호소하는 연출이 행해진다. 역사적인 소재에 의한 「시대물」, 서민들을 소재로 한 「세와모노」, 교토와 에도의 취미

다.)의 계승 및 발전을 피하기 위해 전통 예능의 공연 등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0조).

③ 예능의 진흥

국가는 강담(講談), 락쿠고(樂語), 로쿄쿠(浪曲), 만담, 가창 그 외의 예능(전통 예능을 제외하다.)의 진흥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예능의 공연 등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1조).

④ 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

국가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 및 그 보존 기술(이하 「문화재 등」이라고 한다.)의 보존 및 활용을 피하기 위해 문화재 등에 관해 복구, 방재 대책, 공개 등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3조).

⑤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

국가는 각지역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의 진흥을 피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 예능 및 민속 예능(지역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민속적인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4조).

⑥ 국제 교류 등의 추진

국가는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교류 및 공헌의 추진을 피함으로써, 일본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을 피함과 아울러, 세계의 문화 예술 활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 활동자의 국제적인 교류 및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행사의 개최 또는 행사 참가의 지원, 해외의 문화유산의 복원 등에 관한 협력, 기타 필요한

의 차이를 반영시킨 상연 목록이나, 요염한 배우의 모습을 클로즈 업 하는 무용곡도 많아, 성숙한 에도의 도시 문화를 상징하는 예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때그때의 관객의 취향을 살피며 시대를 리드해 왔다. 고전 예능이면서, 현대성을 내포 하는 것에 매력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www.bunka.go.jp/culture-online/jp/genre/classical_drama.html

시책을 강구한다(제15조 제1항)

⑦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

국가는 문화 예술에 관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 전통 예능의 전승자, 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 문화 예술 활동의 기획 등을 하는 자, 문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 그 외의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자(이하 「예술가 등」이라고 한다.)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의 연수에의 지원, 연수 성과의 발표의 기회의 확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6조).

⑧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교육 연구기관 등의 정비 등

국가는 예술가등의 양성 및 문화 예술에 관한 조사 연구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문화 예술과 관련되는 대학, 그 외의 교육 연구기관 등의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17조).

⑨ 국민의 감상 등의 기회의 충실

국가는 널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이에 참가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을 창조할 기회의 충실을 위해 각 지역에서의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의 지원, 이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1조).

⑩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행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이러한 자의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의 정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2조).

⑪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국가는 청소년이 행하는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의 공연, 전시 등에의 지원, 청소년에

의한 문화 예술 활동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3조)

⑫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

국가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예술 활동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문화 예술에 관한 체험 학습 등 문화 예술에 관한 교육의 충실, 예술가 등 및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이하 「문화 예술 단체」라고 한다.)에 의한 학교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협력에의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4조).

⑬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국가는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에 관해 자체 설치 등과 관련되는 시설의 정비, 공연 등에의 지원, 예술가 등의 배치 등에의 지원, 정보의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5조).

⑭ 지역에서의 문화 예술 활동 장소의 충실(제27조 관계)

국가는 국민에게 친밀한 문화 예술 활동 장소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의 문화 시설, 학교 시설, 사회 교육 시설 등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제27조).

⑮ 민간의 지원 활동의 활성화 등

국가는 개인 또는 민간 단체가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행하는 지원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함께,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 예술 단체가 개인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의 기부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1조)

2.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목 적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¹⁴⁾은 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의 다양화에 의한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의 매력 증진에 이바지함과 함께 소비 생활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은 특정지역 상공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행사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꾀하고, 그로 인해 풍요로운 국민 생활 및 지역의 고유의 문화 등을 살린 개성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정 의

이 법률에서 ① 『지역 전통예능 등』이란 지역 민중의 생활 속에서 계승되어 해당 지역의 고유 역사, 문화 등을 특색있게 반영한 전통적인 예능 및 풍속 관습을 말하며, ② 『활용행사』란 관광 및 특정 지역 상공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행사로, 지역 전통예능 등의 실연, 지역 전통 예능 등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등의 전시, 기타 방법에 의해 지역 전통예능 등을 그 주제로서 활용한 것 중 국내 관광 및 국제 관광과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상당 정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③ 『특정사업 등』이란 지역 전통예능 등의 실연 등과

14) 地域伝統芸能等を活用した行事の実施による観光及び特定地域商工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제정 : 1992년 6월 26일 법률 제88호, 최종 개정 : 2007년 6월 1일 법률 제70호)

관련된 인재의 확보, 지역 전통예능 등과 관련되는 실연 등을 행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 지역 전통예능 등에 이용되는 물품의 확보, 활용 제품, 선전, 관광 여행자 및 고객의 편의의 증진 등에 관한 사업 또는 조치로 활용행사와 관련된 것 중 활용행사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꾀하기 위해 활용행사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것을 말하며, ④ 『특정지역 상공업』이란 활용행사가 실시되는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역에서의 소매업, 해당 소매업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으로 해당 활용행사가 실시되는 도도부현의 구역의 것과 해당 활용행사와 관련된 지역 전통예능 등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품 및 해당 지역 전통예능 등과 관련된 활용 제품의 제조업으로 해당 활용행사가 실시되는 도도부현의 구역의 것을 말하며, ⑤ 『활용제품』이란 지역 전통예능 등의 특징 또는 지역 전통예능 등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기타 물품의 특징을 활용해 기능 및 효용을 높인 제품을 말한다(제2조).

(3)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수립

1) 기본방침의 수립

국토교통 대신, 경제산업 대신, 농림수산부 대신, 문부과학 대신 및 총무 대신(이하 『주무 대신』이라고 한다.)은 활용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에서의 활용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도도부현에서의 활용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

침, 활용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예능 등에 관한 사항, 활용행사의 실시 주체, 실시 장소, 실시 기간 및 실시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특정사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활용행사에서 활용되는 지역 전통예능 등 중 문화재인 것의 보존에 관한 사항,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기타 활용행사의 실시에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4) 국가 등의 원조 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기본계획에 근거해 행하는 활용행사 및 특정사업 등 (이하 『계획활용행사 등』이라고 한다.)의 실시 주체에 대해 계획활용행사 등의 확실하고 효과적인 실시에 관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원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지방공공단체가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금 사정 및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 배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동조 제2항).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주무 대신, 관계 지방공공단체, 관계 단체 및 관계 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이 촉진되도록 서로 제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문화재보호법

(1) 목 적

『문화재보호법』¹⁵⁾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함께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5) 文化財保護法(제정 : 1950년 5월 30일 법률 제214호, 최근개정 :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7호)

(2) 문화재의 정의

이 법률에서 「문화재」란, ①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필적, 서적, 고문서, 기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러한 것과 일체가 되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과 고고자료 및 기타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이하 「유형문화재」라 한다), ② 연극, 음악, 공예기술, 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일본에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 ③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 및 이들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의 물건으로 일본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하 「민속문화재」라 한다), ④ 패총, 고분, 도성, 성, 고택, 기타 유적으로 일본에 있어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 정원, 교량, 협곡, 해변, 산악, 기타 명승지로 일본에서 예술적 또는 관상적 가치가 높은 것과 동물(생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및 야생광물(특이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일본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하 「기념물」이라 한다), ⑤ 지역 사람들의 생활 또는 생업 및 해당 지역의 풍토에 의해 형성된 경관지로 일본국민의 생활 또는 생업을 이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하 「문화적 경관」이라 한다), 그리고 ⑥ 주변 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역사적 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하 「전통적 건조물군」이라 한다)을 말한다(제2조 제1항).

(3)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임무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문화재가 일본의 역사, 문화 등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장래 문화의 향상 발전의 기

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그 보존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빈틈없는 주의로 이 법률의 취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제3조).

(4) 무형문화재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문부과학대신은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문부과학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할 때에는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자가 주된 구성원이 되는 단체로 대표자가 정하여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를 인정하여야 한다(제71조 제1항 및 제2항).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의 해제

중요무형문화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은 경우,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부과학대신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보유자가 심신장애 때문에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유단체가 그 구성원의 이동으로 보유단체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부과학대신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 및 제2항).

3) 보유자의 이름변경 등

보유자가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 기타 문부과학성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문부과학성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갖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보유자 사망과 관련한 경우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유단체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나 대표자를 변경하고, 구성원에 이동이 발생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도 대표자(보유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에 대해서 동일하다(제73조).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

문화청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 자체 기록 작성, 전승자 양성, 기타 그 보존을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국가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그 보존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74조 제1항).

5)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문화청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를,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 소유자에 대해 그 기록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제75조 제1항).

6)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조언 또는 권고

문화청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보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그 보존을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76조).

4. 문화공로자연금법

「문화공로자연금법」¹⁶⁾은 문화의 향상 발달에 특히 현저한 공적이

16) 文化功勞者年金法(제정: 1951년 4월 3일 법률 제125호, 최종 개정: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있는 사람(이하 「문화 공로자」라고 한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법 제1조). 문화 공로자는 전형자중에서 문부 과학 대신이 결정하며(법 제2조), 문화 공로자로 결정된 자에게 문화공로자 연금증서(이하 「연금 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한다(동 시행령 제2조). 문화공로자에게는 종신으로 정령¹⁷⁾으로 정한 금액의 연금이 지불되며, 정령에 따라 3백5십만엔의 연금이 지급된다(법 제3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조).

5. 소 결

일본의 문화예술 내지는 전통예능에 대한 정책 및 법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문화예술 내지는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정책 및 법제와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일본의 경우 전통예능)만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률도 두 나라가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거나 문화예술을 포괄하는 규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예술이나 전통예능의 진흥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나라의 법제를 살펴볼 때, 일본의 경우는 관광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특색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 전통예능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독립법률(지역 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의한 관광 및 특정지역 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전통예능을 포함한 문화예술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종신 문화공로자 연금을 지급하는 근거 법률(문화공로자연금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공연예술의 진작과 이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앞으로의 관련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17) 文化功勞者年金法施行令(제정 : 1951년 5월 10일 정령 제147호, 최종 개정: 2002년 12월18일 정령 제385호)

제 5 장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제 1 절 전통공연예술진흥법 제정 관련 쟁점

1.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전통) 진흥과 중복문제

(1) 현 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일반법이다.

(2) 문제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현대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전통공연예술은 ‘국악’으로만 통합되어 있어 현대공연예술에 비하여 진흥 및 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문화예술위원 10명(문학 3명, 현대공연예술 3명, 예술행정 2명, 미술 1명, 전통 1명) 중 전통예술 관련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반적인 진흥 및 지원 대책은 자생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공연예술 진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3)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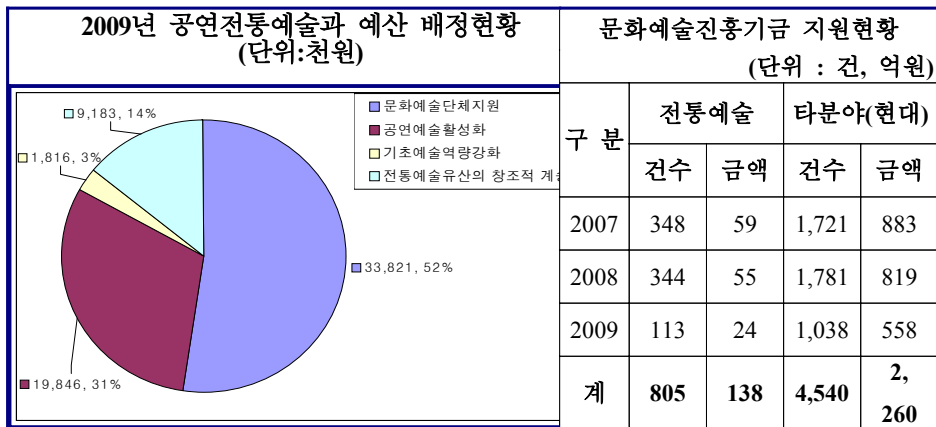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국악’을 전통음악, 전통무용 및 전통연희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진흥 및 지원을 규정하는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을 제정한다.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은 문화에

술의 일부분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및 국악 등에 대한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진흥과 중복된다고 할 수 없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음악을 포함한 문화예술에 대하여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음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영화의 경우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로 특화하여 별도의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통공연예술과 현대공연예술과의 형평성 문제

(1) 현 황

근대(갑오개혁) 이후 서양식 문화와 교육체계의 도입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체계적으로 전승·육성되지 못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2009년 공연분야 예산 중 전통예술 관련 예산 14%이며,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통예술분야 지원은 전체지원 예산의 5.7%에 불과하다.



(2) 문제점

전통공연예술은 자생력과 경쟁력 측면에서 현대공연예술에 비해 떨어져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나, 실제 재정지원이 현대공연물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예술 공연장, 전문인력 등이 타 예술장르에 비해 많이 부족하므로 전통예술을 진흥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3) 검토

전통공연예술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예술과 문화 및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을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며 이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동시에 역사의 계승 및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전통공연예술을 진흥한다는 것은 세계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그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나라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 및 지원은 단순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 홍보 및 위상강화, 세계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 여러 가지와 연관되어 있어 현대공연예술의 진흥 및 지원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전통공연예술과 현대공연예술을 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 인력의 양성, 전통공연예술 명인·명소 지원 등의 법제화를 통한 육성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공연예술의 관광상품

연계, 전통악기의 품질인증, 전통공연예술진흥원 및 국악방송국 설립의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3. 지원사항별 문제

(1) 자료,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전통예술 아카이브

1) 전통예술 아카이브 현황

① 국립국악원의 총체적 아카이브 단계별 구축

전통예술자료 허브기능 수행 및 타 아카이브와의 자료연동 등을 위해 자료 구입 및 기증을 유도하고 있다.

② 개인 및 전통예술유관기관의 자체 소장자료 중심의 아카이브 운영 음향·영상의 디지털 변환 및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전통예술아카이브 및 소장자료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무형문화재 자료), 아르코예술정보관(전통예술일반), 국악음반박물관(고음반), 아카이브천(민속예술), 정창관의 국악음반세계(고음반·전통예술음반), 중앙대 국악아카이브(전통예술일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향토민요), 동국대한국음반아카이브(전통예술음반), 코리아루트(민속예술), 국립국악원(전통예술일반, 논저DB 등)

③ 지자체 전통예술 아카이브 현황

중요무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와 관련된 자료 보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소장 자료의 보존·활용 체계를 갖춘 곳은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시·도에 불과하다.

2) 문제점

전통예술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존·분류되어 있지 않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전통예술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통예

술자료에 대한 대 국민 접근성이 어려워 전통예술 저변확대 및 연구 활성화 기대에 미흡한 실정이다.

3) 검토

전통음악이나 전통무용 등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국의 각 지방별로 고유한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모으고 이를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전통공연예술인이나 학계 등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대한 전통공연예술의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문화관광체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국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자료,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국립 전통예술 아카이브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국악원·아르코 예술정보관 시스템 연동을 통한 자료의 다양화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② 전통예술자료 DB 구축 및 디지털 변환을 지원한다.

자료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전통예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변환을 통한 내구성 확보 및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한다.

③ 안정적인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 전통예술 전문인력 양성

1) 현황

① 기획·연출 분야

전통예술 전공자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극 등 타분야 출신의 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음향·조명

기술·공학 분야 전공자로 전통공연예술 전담 음향·조명 기사는 전무한 상태이다.

③ 사회·프로그램 제작

공연 평론가, 전통예술 전공자 외 언론·방송인 등 극소수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통공연예술 타분야 인력 구성 현황

<마당을 나온 암탉>(국립민속국악원, 2007): 김만석 연출(연극인)

<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국립국악원, 2009): 강신일 출연(연극배우)

◆ 전통공연 진행자 : 오정혜(국악인), 최종민·김영운(국악 교수), 박진영(아리랑TV 프로듀서), 윤중강·현경채(음악평론가)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함

④ 2008년 공연예술 아카데미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전통공연예술 종사자 및 평론·이론가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공연기획·연출의 실무와 이론을 강의하며, 공연기획·연출 분야 지방생 40명이 수료했다.

※ 공연예술 아카데미의 의의와 한계

- 의의 :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초의 시도
- 한계 : 단기간의 이론 중심의 강습, 아카데미 수료 후 진로 불투명

2) 문제점

① 타 분야(현대공연예술 등) 인력의 투입으로 연출·조명·음향 등 전통공연예술의 역동성과 음색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② 전통공연 진행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 인원의 중복 활용 등으로 공연내용의 전문성이 부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3) 검토

어떤 부분이든지 지원하고 진흥시키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음악·무용·국악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전통공연예술아카데미 상설운영

현재 전통공연예술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공연예술 분야 지망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② 전통공연예술 인력풀 제 실시

기존 전문인력 및 전통공연예술아카데미 수료자 중심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장래의 전문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로 양성시킨다.

(3) 전통예술 공연장 지정

1) 현황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으로 국립국악원 등 총 14개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다.

| |
|--|
| <p>※ 전통예술 전용공연장 현황 국립국악원(2개), 국립민속국악원 등 지방국악원(4개), KOUS(서울), 극장 풍류(서울), 전주전통문화센터(전북) 등 14개소</p> <p>※ 전국 등록 공연장 현황 LG 아트홀·예술의 전당·국립극장(서울), 소리문화의 전당(전북), 문예회관 등 총 589개 공연장 운영</p> |
|--|

2) 문제점

① 전통예술공연 기회 부족으로 인한 대중화 저해

전통예술 대표 전용극장인 국립국악원의 경우 대관 신청 중 평균 78%만 수용 가능한 상황(2008년 기준)이며, 일반 공연장의 경우 대관료 금액이 높아 상업성이 부족한 전통예술공연을 개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국립국악원 대관신청 대비 승인 현황>

| 구 분 | 2008년도 | | 2009년도 | | 계 | |
|-----|--------|------|--------|------|------|------|
| | 신청건수 | 승인건수 | 신청건수 | 승인건수 | 신청건수 | 승인건수 |
| 예약당 | 101 | 75 | 91 | 79 | 192 | 154 |
| 우면당 | 117 | 89 | 90 | 73 | 207 | 162 |
| 계 | 218 | 164 | 181 | 152 | 399 | 316 |

② 일반공연장에서의 전통공연예술 특성 부각의 어려움

무대와 객석의 거리, 공간 활용 및 연출 방법에 있어서 전통예술은 현대공연예술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전용공연장을 통한 예술성 극대화도 전통공연예술의 세계화 및 관광상품화 실현이 필요하다.

3) 검토

전통공연예술은 아직까지도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경제력이 약한 노인층 등이 선호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연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공연장으로서는 이를 기피하게 되어 공연 등의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전통공연예술의 보전·진흥을 위해서는 활발한 공연활동을 유도 및 촉진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전통공연예술을 주로 하는 전통예술공연장을 지정하고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전통예술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①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지정 및 운영 지원

전국 공연장 중 전통예술공연에 적합한 공연장을 전용 공연장으로

지정하여 저렴한 대관료로 전통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②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건축·음향 관련 체계적 연구

전통예술 장르별 전용 공연장의 요건 자료 축적을 통해 기존 공연장 개보수 및 신규 공연장 건립을 지원한다.

< 전국 국악전용공연장 현황 >

| 시도 | 시군구 | 시설명 | 시설구분 | 개관일자 | 공연장면적 (㎡) | 무대면적 (㎡) | 객석수 | 무대장비수 |
|-----|-----|-------------|------|--------------|-----------|----------|-----|-------|
| 서울 | 강남구 | 민속극장풍류 | 공공 | 2002-11-22 | 629 | 81 | 147 | 12 |
| 서울 | 강남구 | 코우스 | 공공 | 2003-05-19 | 810 | 105 | 243 | 15 |
| 서울 | 서초구 | 국립국악원 예악당 | 공공 | 2004-10-14 | 3,777 | 1,141 | 777 | 88 |
| 서울 | 서초구 | 국립국악원 우면당 | 공공 | 2004-10-14 | 1,310 | 253 | 367 | 42 |
| 서울 | 종로구 | 전통문화예술 공연장 | 민간 | 2007-04-13 | 432 | 159 | 242 | 11 |
| 서울 | 중 구 | 한국의집 민속극장 | 공공 | 1980-04-01 | 1,269 | 103 | 156 | 37 |
| 경기 | 여주군 | 세종국악당 | 공공 | 2002-12-26 | 378 | 162 | 482 | 12 |
| 경북 | 고령군 | 대가야국악당 | 공공 | 1998-10-22 | 701 | 276 | 451 | 10 |
| 광주 | 서 구 | 빛고을국악전수관 | 공공 | 2002-10-11 | 206 | 57 | 156 | 6 |
| 부산 | 동 구 |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 | 공공 | 2008-10-28 | 3,010 | 980 | 698 | 85 |
| 부산 | 동 구 | 국립부산국악원 소극장 | 공공 | 2008-10-28 | 925 | 121 | 276 | 19 |
| 인천 | 남 구 | 국악회관 | 공공 | 2002-08-30 | 373 | 31 | 180 | 1 |
| 전북 | 남원시 | 국립민속 국악원 | 공공 | 1997-05-07 | 960 | 528 | 652 | 42 |
| 전남 | 진도군 | 국립남도국악원 | 공공 | 2007-07-07 | 4,435 | 572 | 584 | 48 |
| 충북 | 영동군 | 난계국악당 | 공공 | 1987-04-08 | 1,977 | 310 | 496 | 12 |
| 충남 | 부여군 | 부여국악의전당 | 공공 | 05/2/16 | 383 | 186 | 198 | 18 |
| 합 계 | | | | 14개(10개 시·도) | | | | |

(4) 전통연희 열린마당 운영

1) 현 황

전국 지자체마다 야외무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 공연예술용 무대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부 야외상설공연 운영 공연장 현황>

서울(서울놀이마당), 부산(용두산공원 야외공연장), 대구(두류공원 야외음악당), 광주(쌍암공원 야외공연장), 대전(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 경기(구리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전남(보성녹차밭 야외공연장), 경북(직지문화공원 야외공연장), 강원(춘천어린이회관 야외공연장) 등

* (밑줄)은 전통연희 가능 공연장

2) 문제점

① 전통연희는 현대공연예술, 발레, 연주 위주의 국악공연과는 달리 객석과 무대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대가 아닌 사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무대가 정면 배치 무대로 전통연희공연에 부적합하다.

② 전통연희는(줄타기, 탈춤, 풍물 분야는 공연장비 및 음향 등) 실내공연이 부적합하며, 야외 공연을 통해 예술성을 부각시켜야 하나 장소가 부족하다.

<일반 공연장에서 전통연희 공연시 발생하는 문제점>

- 줄타기 : 무대 뒤에 줄조임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여 공연하는 사례가 있으나 줄의 장력이 약해 연희자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 판 굿 : 열두 발상모 등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문 연희공연을

하기에 부적합

○ 탈 춤 : 관객과 주고받는 호흡이 필수적이나 무대와 객석이 멀어 공연의 분위기를 돋우기 어려움

3) 검토

① 전통연희 전용 열린마당 지정 및 운영 지원

전국적으로 전통연희에 적합한 열린마당을 지정하여 전용 공연장으로 운영을 지원하며, 전통연희 공연이 가능한 야외공연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전통연희에 적합한 야외공연장 설립을 지원한다.

② 전통연희 단체 공연 지원

전국 200여개에 달하는 전통연희 단체 공연 지원을 통해 전통연희의 보존·전승 및 창작을 활성화한다.

(5) 명가, 명소 지정

1) 현황

판소리·기악·풍물 등을 보존·계승하고 있는 3대 이상의 가문에 대하여 ‘전통예술 명가’로 지정하고 있다(2007년, 전통예술팀).

※ 전통예술 명가 현황
 정응민·정권진·정희석(판소리) 보성소리 명가
 박종기(대금)·박병천(연희)·박환영(대금)·박영규(대금) 남도 예술명가
 심정순(판소리)·심화영(전통무용)·이애리(전통무용) 충청제 예술 명가
 장관개·장월중선·정순임(판소리) 동편제 판소리 명가 등

※ 전통예술 명소 현황
 김소희 명창 생가터(전북 고창군 소재)
 송홍록 명창 생가터(전북 남원시 소재)
 권삼득 명창 소리터(전북 완주군 소재) 등

2) 문제점

① 전통예술은 대대로 가계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나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 후손들이 가업을 잇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일부 명가만이 후손들의 의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② 현재 7개의 명가가 전통예술 명가로 지정되어 운영 및 공연비용을 지원(2007년, 각 20백만원)받았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

③ 전통예술 명소는 제대로 된 관리 인력이 없고 방문객들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이해할만한 볼거리와 공연·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 검토

전통공연예술은 단순한 문화예술의 범위를 넘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및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며 나아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전통공연예술인의 지위나 보수 등은 아직까지도 사회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전통공연예술인에 대한 지위향상 등을 위한 시책이 필요하고 그 시책의 하나로서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공연예술인의 가계를 명가로 지정하고 생가와 수련장 등을 명소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하는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예술 명가 전시관 건립

전통예술 명인 관련 자료·음반·기념품 등을 전시하고 관리인력을 지원하며, 관광·교육·체험과 결부시켜 대중 및 청소년에게 알림으

로써 전통예술 및 명인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② 전통예술 명가 정기 공연 지원

전통예술명가 중심의 정기공연 개최 지원을 통해 전통예술 명가의 후손이 전통예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고취시킨다.

③ 전국적 전통예술 명가·명소 지도 제작

전통예술 명가·명소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

(6) 전통악기의 개량 및 품질인증 등

1) 현 황

① 국립국악원

1965년부터 1989년까지 4차례에 걸쳐 관·현·타악기 총 30종을 개량하고,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금속타악기·현악기(가야금)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2006년 『악기연구소』 설립으로 고악기 복원 8종, 신악기 개발 2종 등을 완료했다.

② 개인 및 단체

1989년 이후 13개 개인 및 단체에서 국악기 개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 전자거문고(1989, 김진희), 각종 현악기(1994 이후, 한국음악발전연구원, 관악기(1994 이후, 신용춘/이용구), 가야금 등(1997, 전북도립국악원), 화현금(1984 이후, 이재화), 공후(2003 이후, 조석연) 등

③ 복한 사례

1950년 이후 대부분의 전통악기의 현대화 개량(음색, 음량, 주법)을 완료했다.

2) 문제점

① 개량 목적이 불분명(대중화, 연주의 편의, 세계화 등 산발적)하고, ② 제작자·연주자·과학자의 체계적인 공동 연구가 부재하며, ③ 개량된 악기의 연주 레파토리가 부족하다(창작음악의 대중화 필요).

3) 검토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악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꾸준히 하여 전통악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표준화 및 개량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악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전통악기가 생산되고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전통공연예술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계승 및 육성·진흥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수의 신장과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칭 「전통공연예술진흥법」을 제정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공연예술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전·계승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전통공연예술의

범위를, 한민족의 전통적인 선율·장단·성음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전통음악,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내면적인 욕구를 율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전통무용, 악·가·무·재담·몸짓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무당굿, 가면극 등의 전통연희 등으로 규정한다.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공연예술”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 행위 및 그 성과를 말한다.
 - 가. 전통음악 : 한민족의 전통적인 선율·장단·성음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궁중음악, 민속음악, 선비음악, 종교음악, 연희음악 또는 놀이음악 등 일체의 청각예술
 - 나. 전통무용 :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내면적인 욕구를 율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궁중무용, 민속무용 또는 종교무용 등 일체의 신체예술
 - 다. 전통연희 : 한민족의 전통적인 악, 가, 무, 재담, 몸짓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무당굿,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광대극, 줄타기, 택견, 곡예 등 일체의 연극적인 예술

2. 전통공연예술의 보전·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체계적인 보존, 계승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계승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제0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공연예술의 체계적인 보존, 계승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전통공연예술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2.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계승 및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3.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전통공연예술의 계승 및 교육
6. 전통공연예술의 정보화 및 산업화
7. 전통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전통공연예술의 지역 간 특성화 및 균형발전
9. 전통공연예술인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계승 및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11.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공연 현황 및 수요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전통공연예술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전통공연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전통공연예술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전통공연예술위원회를 둔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위원회) ①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전통공연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계승 및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책방향
3.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계승 및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통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전통공연예술을 주로 하는 공연장과 놀이마당 등 전통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전통예술공연장과 전통예술마당으로 각각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공연예술인의 가계, 전통공연예술인의 생가

와 전통공연예술 수련장 등을 전통공연예술 명소 및 명가로 지정하여 보호·육성, 보전하는 한편,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통공연예술을 보전 및 계승하도록 한다.

(1) 전통공연예술 자료·정보의 체계적 관리

제00조(전통공연예술 자료·정보의 체계적 관리) ① 국가는 전국의 전통 공연예술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종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00조(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공연예술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계승 및 진흥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통예술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 전통예술공연장 등의 지정

- 제00조(전통예술공연장 등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전통공연예술을 주로 하는 공연장을 전통예술공연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많이 모이는 놀이마당, 전통민속마을, 주요 관광명소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전통예술마당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예술공연장과 전통예술마당의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예술공연장과 전통예술마당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교육

- 제00조(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교육)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전통공연예술을 교육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정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프로그램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전통공연예술 명소 및 명가의 지정 등

제00조(전통공연예술 명가 및 명소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공연예술인의 가계를 전통공연예술 명가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공연예술인의 생가와 전통공연예술 수련장 등을 전통공연예술 명소로 지정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공연예술 명가와 명소의 보호·육성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공연예술 명가와 명소의 지정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악 5대 명가 : 이원근 → 이인식 → 이수경 → 이병성 → 이동규 (궁중음악인)
- 판소리 명가 : 정재근 → 정응민 → 정권진 → 정희석 (판소리)
- 전통예술 명가 : 심상근 → 심정순 → 심화영
- 판소리 명소 : 이동백 독공터, 박초월 생가, 강도근 소리 전수관 등

4. 전통공연예술의 육성 및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각종 행사 등의 전통공연예술 활용, 전통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전통공연예술 및 관광상품의 연계, 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의 산업화, 전통악기의 품질인증 등, 그리고 전통공연예술 활동의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통공연예술 활용 및 국제교류 활성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예식이나 기념 등의 행사에 전통공연예술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전통공연예술의 국제적 교류 및 해외의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다.

제00조(각종 행사 등의 전통공연예술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각종 예식이나 기념 등의 행사 또는 축제 등의 행사에 전통공연예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전통공연예술 및 관광상품의 연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관람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관광사업자와 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 및 관광상품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우리나라를 관광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광상품으로 전통공연예술을 관람하게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관람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자 또는 전통공연예술을 관광상품으로 채택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조(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의 산업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

통공연예술에 대한 산업화를 위하여 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의 산업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3) 전통악기의 품질인증 등

전통악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전통악기의 표준화 및 개량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전통악기의 품질을 높이고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전통공연예술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조(전통악기의 품질인증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악기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전통악기의 표준화 및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악기의 품질을 높이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악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화 및 개량 사업과 품질인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전통악기의 품질인증을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통공연예술 활동의 촉진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위하여 전통공연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전통공연예술인 및 전통공연예술단체가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연장소의 제공 및 알선,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협조, 국제문화예술축제 등의 행사참가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도록 하며,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00조(전통공연예술 활동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공연예술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위하여 전통공연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인 및 전통공연예술단체가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소의 제공 및 알선
2. 공연프로그램의 개발협조
3. 국제문화예술축제 등의 행사참가 지원
4. 그 밖에 공연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5. 전통공연예술진흥원 및 국악방송국의 설립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을 전통공연예술진흥원으로 변경 설립하고, 국악의 창작·교육·연구 및 대중화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운영 및 국내외 국

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하여 국악방송국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1) 전통예술진흥원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 제00조(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설립) ①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
 - 2. 전통공연예술의 진흥·활용을 위한 사업
 - 3. 전통공연예술의 창작활동 지원
 - 4. 전통공연예술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연계 추진과 협력망의 구축
 - 5.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악방송국의 설립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국악방송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국악방송국의 설립과 동시에 국악방송국이 포괄 승계한다.

제00조(국악방송) ① 방송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 교육, 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전통공연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악방송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서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혜숙(편), 문화예술, 법률과 현실의 경계에 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안 추진의 현황과 문제점(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12.18
- 김경현, “기업메세나 지원을 통한 한국전통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세연, “문화상품으로서 전통예술공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을동(편), 21세기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자료집), 2009.12.18
- 문화관광부, 전통예술활성화 방안-비전 2010, 2006.9.
- 문화관광부(편), 전통연희 산업화와 세계화 및 인력양성 방안, 2007
-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정책백서, 2009.10
- 안선국, “한국의 전통공연예술 정책에 관한 연구 : 중요무형문화재 예능종목 보급 및 선양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원일, 윤정섭, 이병훈, 안은미, 송혜진, 홍상희, 박정훈, “다른 시대에는 다른 미학이 필요하다 : 전통예술이 오늘의 예술이 되기 위한 과제들”(좌담), 『문화예술』, 제331호 (2008년 겨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27쪽
- 이영미, “전통예술의 대중적·현대적 계승 : 신민요와 사물놀이의 예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통권 1호(2008년 4월), 179-197쪽
- 이용식, “전통공연예술 활성화 정책의 전망과 과제”, 『文化政策論叢』,

참고문헌

- 제19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39-65쪽
- 이준형, “참여정부의 문화법제의 변화와 그 평가”, 『文化政策論叢』, 제19집(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7-86쪽
- 이지선, 일본전통 공연예술, 제이앤씨. 2009
- 정진미, “한국 전통춤 공연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상설 무용공연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인향, “일본전통무대예술의 해외발전 고찰 : 2000년 이후의 가부키(歌舞伎) 해외공연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제40집 (2008년 2월), 일본어문학회, 339-356쪽
- 한국공연문화학회, 전통공연예술의 재조명, 2005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통예술의 세계화 방안 :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1995
- 한명희, “전통예술의 원형 담론에 대한 성찰”, 『예술논문집』, 통권 제46호 (2007년), 대한민국예술원, 157-179쪽

국외문헌

- 일본 文部科學省, 『2008 文部科學白書』, 2009
- http://www.bunka.go.jp/culture-online/jp/genre/classical_drama.html
-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kihonhou/teian_riyu.html
- http://www.bunka.go.jp/geijutsu_bunka/souzoukatsudou/kasseika_sien.html
-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kihonhou/index.html
-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kihonhou/kihonhou.html
- http://www.bunka.go.jp/bunka_gyousei/kihonhou/youkou.html